

#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



##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3.11.1.		16		
2	2017.11.2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#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「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」 및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,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·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, 한국항공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적용대상)**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 예산 또는 교비 연구비로 구입하는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(이하 “연구 장비”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**제3조 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<삭제 2013.11.1.>
- ② 구축비용 1억 원 이상의 연구 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(전문기관) 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(미래창조과학부)에 상정 <개정 2013.11.1.>
- ③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해 단독활용/공동활용서비스 장비 판정(선정) 및 해제 [단독활용장비 판단기준(별지 제1호에 명기) 활용]<개정 2013.11.1.>
- ④ 구축비용 3천만 원 이상의 유희·저활용·불용장비에 대한 판단, 자산 이관 및 처리 사항<개정 2013.11.1.>
- ⑤ 연구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
- ⑥ 연구 장비의 특성, 활용기간,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(구매/개발/임차) 검토 및 결정
- ⑦ 기타 연구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4조 (구성)**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산학협력단장, 사무처장, 공대학장
  2. 임명직 위원 : 전임교원 2인, 외부기관의 관련 전문가 3인
-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,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당연직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의 간사는 산학협력단 사무국장으로 한다.
- 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.

**제5조 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 (회의 및 의결)**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

다.

**제7조** (장비심의) ①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연구 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<별지 제1호 서식>에 의한 연구 장비 도입 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, 위원회는 <별지 제2호 서식>에 심의 결과를 작성한다.  
<개정 2013.11.1.,2017.11.2>

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 및 현지를 실시할 수 있다.

**제8조** 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,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13.11.1.,2017.11.2>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

